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탁의 거부) ① ~ ② (생략)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**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**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. ④ ~ ⑤ (생략)	제6조(수탁의 거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전자증권법'라 한다)에 따른 고객계좌부,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, 예탁자계좌부 -- 전자등록(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) 또는 기재----------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) ① 회사는 고객의 **예탁증권**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**예탁증권**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(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)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신주인수권·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고객의 **예탁증권**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,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2%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1조(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) ① ---------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(이하 '전자등록주식등'이라 한다) 또는 예탁증권----------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---------- ② ----------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---------- ③ (현행과 같음)